

인삼류 자체검사업체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업체명(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제조장 소재지				전화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인삼제조업 신고							
신고 연월일		신고번호		제조인삼종류			
제조관리부서 책임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검사관리부서 책임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자체검사업체로 지정 받고자 하는 인삼 종류 및 품목							
인삼 생산, 검사 및 판매내역							
연도	삼종	품목	연근	생산량	검사량	판매량	
「인삼산업법」 제17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인삼류제조업신고확인증 사본 1부 2. 인삼류 품질관리 시설 및 인력 내역 1부 3. 최근 1년 동안 인삼의 종류별로 자가제조하여 인삼류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은 실적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신청인	→	접수 국립농산물 검사기관	→	적합여부 확인 국립농산물 검사기관	→	지정여부 결정 국립농산물 검사기관	→	결재 국립농산물 검사기관	→	결과 통보